

무안군 군수공약사항 관리규정

(제정) 2006.06.15 훈령 제 225 호

(일부개정) 2009.01.02 훈령 제257호 무안군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

(일부개정) 2020.01.23 훈령 제34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군수 선거공약의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상황의 점검, 공약 이행평가 및 공개등 관한 사항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에 대해 기획실장은 임시코드번호를 부여 하여 선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서(이하 “사업부서”라 한다)에 실천 가능 여부등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사업부서에서는 실천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.

1. 법률적 검토(조례 제·개정 포함)
2. 임기내 실천가능 여부 판단
3. 투자소요액 및 연도별 자원 조달계획 판단
4. 임기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판단 등

③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소관 공약사항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의 수립
2.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및 계획 수립
3.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
 - 가. 광범위한 자료, 지식, 경험을 활용
 - 나. 관련부서, 전문 연구기관 및 시민 각계의 의견 수렴 반영
- 다.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
4.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
5.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
6. 공약사항은 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
7.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 방안 강구
8.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,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자원조달 대책 강구
9.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

④ 기획실장과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자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.

⑤ 기획실장은 각 사업부서의 시행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관련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관리 코드 번호를 부여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.

1. 1차분류 : 대단위 사업분야 또는 군정 방침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
2. 2차분류 : 단위사업 기준으로 분류

제3조(시행계획의 변경) 시행계획의 확정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정·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이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세부추진계획 작성) 시행계획을 시달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총괄 세부 추진계획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약전산시스템 등록관리)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의 시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전직원이 공

유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시스템(연동기능/공약사항)에 등록 관리하여 한다.

② 시행 계획 확정된 공약사항은 즉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즉시 알린다.

제6조(추진상황 점검) ① 각 사업 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공약 추진상황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기획실장은 각 사업부서의 장이 통보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,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기획실장은 자체 심사평가 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,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다.

④ 기획실장은 감사부서를 통하여 반기별로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추진상황 보고회) 기획실장은 매 반기별로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, 공약 추진상황은 군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(공약의 성실이행 의무) 각 사업 부서의 장은 공약과 관련하여 시행계획과 세부추진계획 등에 의거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약이행평가단 구성) ① 기획실장은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성실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“공약이행평가단” (이하 “평가단” 이라한다)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가, 군의원, 시민단체,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.(일부개정 2020.1.23.)

1.(삭제 2020.1.23.)

2.(삭제 2020.1.23.)

③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평가단원중에서 호선한다.(일부개정 2020.1.23.)

1.(삭제 2020.1.23.)

2.(삭제 2020.1.23.)

제10조(기능) ① 평가단은 선거 과정에 약속한 공약에 대한 적정성과 이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평가단은 선거과정에서 군수가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의 성실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한다.

제11조(임기) ①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일부개정 2020.1.23.)

②(삭제 2020.1.23.)

③ 평가단 단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(일부개정 2020.1.23.)

제12조(수당 등) 평가단의 위촉직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방법) ① 각 공약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② 각 공약의 세부사업별 진척정도와 사업계획대 사업비 확보 및 집행 비율 등 공약 이행 정도를 알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한다.

제14조(평가기간)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.

제15조(평가시기) 매년 6월에 실시하되 필요시 평가단에서 시기를 정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평

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평가결과의 공개) 평가단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 평가결과는 평가 후 1월이내에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, 시민 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한 매니페스토 운동(참공약실천하기)에 적극 협조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훈령349호 2020.1.23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